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전국 법원의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등 법정통역이 필요한 모든 사건의 통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화성등기소(오산시 관할 제외)를 통합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사무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관장부서와 담당사무를 정함(안 제2조제13항 및 별표 1의13 신설)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등기국을 신설하고, 등기국에 등기운영과 및 등기조사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4의1 및 별표 4의2)

## 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

별표 1의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1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13]

법원행정처 법정통역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관장부서	담당사무
사법지원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국 법원의 민사·형사·가사·행정·도산사건 등에 관한 영상 통역, 출장 통역, 번역</li><li>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번역</li><li>3. 법정통역 녹음물에 대한 감정</li><li>4.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지원·사법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번역</li><li>5. 기타 사법부 통역·번역 관련 업무 지원</li></ol>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들 국·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공탁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가사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4의2]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총무과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감사 2.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및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제외
종합 민원실	1.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사건의 소장, 신청서, 구술제소 및 기타 모든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지급명령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 구속영장,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탁 및 보관금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안내	1.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사,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외 2. 법원 청사사정에 의하여 분장사무 중 일부는 타 과로 조정할 수 있음 3.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각 소관 과에서 관장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분장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
민사과	민사에 관한 사건의 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 신청과	민사신청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형사과	형사에 관한 사건의 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과	기록 및 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 과에서 관장

등기과	등기와 공증에 관한 사항	
등기 운영과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등기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등기 조사과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1) 민사과가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민사합의1과 및 민사합의2과를 포함한다), 민사단독과(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를 포함한다), 민사소액과(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를 포함한다) 등으로, 민사신청과가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등으로, 형사과가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를 포함한다) 등으로, 등기조사과가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등으로 각각 분과된 지방법원의 각 과는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또는 등기조사과의 각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는 각 소속 국의 관장사무 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 (3)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 사건에 관한 사항,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 민사신청과 분장사무 중 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4)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와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5)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6)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7)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 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합의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에 관한 사항,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8)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 등기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 ⑫ (생략) <u>&lt;신 설&gt;</u>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⑬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u> <u>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u>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25